

전주지방법원 2020. 10. 28 선고 2019나3687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재판경과

전주지방법원 2020. 10. 28 선고 2019나3687 판결

전주지방법원 2019. 3. 22 선고 2018가단20882 판결

전 문

원고, 항소인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임

피고, 피항소인1.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유희

2. C

3. 망 E의 소송수계인 겸 망 E의 소송수계인 F, G, H, I, J, K의 승계참가인 L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일 담당 변호사 신희명, 김해정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유희

피고(탈퇴)4. 망 E의 소송수계인 F

5. 망 E의 소송수계인 G

6. 망 E의 소송수계인 H

7. 망 E의 소송수계인 I

8. 망 E의 소송수계인 J

9. 망 E의 소송수계인 K

변론 종결2020. 10. 7.

판결 선고2020. 10. 28.

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19. 3. 22. 선고 2018가단20882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전북 장수군 V 답 1,818m²에 관하여, 원고에게, 피고 B, 피고 C은 각 1988. 2. 8.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접수 제574호로 마친 각 공유지분이전등기(각 1/2 지분) 중 1/4 부분에 관하여, 망 E의 소송수계인 겸 망 E의 소송수계인 F, G, H, I, J, K의 승계참가인 L는 위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5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1/4 지분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(원고는 당심에서 전북 장수군 W 답 3,189.2m²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)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당사자 관계

- 1) M(이하 '망인'이라고 한다)는 1974. 8. 16. 전북 장수군 V 답 1,818m²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고 한다)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- 2) 망인은 1987. 5. 16. 사망하였고,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피고 B(처)과 피고 C(아들)이 있었다.
- 3) 망인은 1970. 3. 24. '원고가 N일자 출생하였다'라고 신고하였고, 1985. 11. 1. '원고가 1985. 10. 23. 오후 7시 30분 장수군 O에서 사망하였다'라고 신고하였다.
- 4) 원고는 2002. 7. 10.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으로부터 호적정정 확정판결을 받아 위 3)항 기재의

사망신고가 말소되었고, 2002. 7. 23. 전주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(구 호적부)에 기재되어 있던 "부 P 명불상, 모 성명불상", "본 : 정선", "전 호적 : 서울 종로구 Q 호주 A", "출생란 R", "출생사유 서울 종로구 S 번지미상에서 출생"을 "부 M, 모 T", "본 : 천안", "전 호적 : 전주 덕진구 U 호주 C", "출생란 N", "출생사유 전북 장수군 O에서 출생 1970. 3. 24. 부 신고"로 각 정정하였다.

나. 이 사건 토지 처분경과

1) 피고 B, C은 1987. 5. 16. 망인에 대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제1토지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1988. 2. 8. 접수 제5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1988. 2. 3. 위 토지에 대한 위 피고들의 지분을 망 E에게 매도하여 망 E은 같은 등기소 1988. 2. 8. 접수 제57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2) 망 E은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인 2018. 9. 15. 사망하였고, 망 E의 소송수계인 겸 망 E의 소송수계인 F, G, H, I, J, K의 승계참가인 L(이하 '피고 L'라고 한다), F, G, H, I, J, K가 E의 상속인으로서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.

3) 피고 L는 2018. 9. 15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2019. 1. 9. 접수 제2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3 내지 11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 요지

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호적상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어 상속에서 배제되었고,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으로부터 호적정정결정을 받았는바,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지분은 1/4이다.

피고 B, C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각 상속지분이 3/8임에도 불구하고, 자신들 앞으로 각 1/2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, 이를 망 E에게 매도하여 망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, 위 등기는 다시 피고 L에게 상속에 의해 이전되었다.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상속지분인 1/4 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[피고 B, C의 각 1/2 지분 중 1/4 부분(각 1/8 지분 부분), 피고 L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1/4 지분]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.

3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

가.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,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(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)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,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,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에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(대법원 2006. 7. 4. 선고 2005다45452 판결). 민법 제999조 제2항은 "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,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."고 규정하고 있는바, 여기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'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'이라 함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한다(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9다42321 판결 참조).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는 법원이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한 후 기간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 판명되면 부적법한 소로 각하하여야 한다(대법원 1993. 2. 26. 선고 92다3083 판결, 대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9다41199 판결 등 참조).

나.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/4 지분이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주장하면서 피고 B, C 및 망 E의 상속인인 피고 L를 상대로 각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.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B, C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망 E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1988. 2. 8.에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. 8. 20.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. 원고는 이에 대하여, 이 사건 소에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.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,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[대법원 1995. 11. 10. 선고 94다22682, 22699(반소) 판결, 대법원 2007. 6. 1. 선고 2005다3304 판결 등 참조]. 따라서 제척기간 도과로 인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

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는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조지환

판사나상훈

판사오창민